#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강혜경 의원 대표발의)

| 의안 번호 | 1646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9.
발 의 자 : **강혜경, 안영호, 문희성, 권태호, 박경흠, 김지근, 노세영** (7명)

## 1. 개정이유

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"재위탁", "재계약" 근거를 마련과 동의안 제출 기한·기준을 명시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안정적인 위탁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"재위탁, " 재계약 "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 3호, 4호)
나. 의회의 동의 기한 설정-위탁예정 30일전까지 동의(안 제6조)
다.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할 내용 신설(안 제7조)
- 위탁사무명·근거·필요성·위탁내용, 선정방식, 적정성 검토결과 등
라. 수탁자 공개모집 시 '배점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' (안 제8조)
마.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수 조정(안 제9조)
- 11명 이하(중구의회의원2명, 공무원3명)
→ 7명 이상 11명 이하(중구의회의원 1명, 공무원3명 이내)
바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기준 신설(안 제10조)
사. 협약 체결 → 계약 체결(안 제11조)
아. 사무시설 운영 인계·인수 신설(안 제14조)
자. 수탁기관의 주의사항 신설(안 제15조)
차. 주요사항 사업변경 시 사전 구청장의 승인 신설(안 제16조)
카.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신설(안 제21조)
타. 제3자 위탁 등 금지(안 제22조)

## 3. 근거법규 :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

## 4. 개정조례안 : "따로 붙임"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사무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 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민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위·수탁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**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**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**제6조(승인 및 동의)**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.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
**제7조(민간위탁 동의안)**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을 말한다)
5. 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8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수탁기관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모집 공고시 배점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인력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**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
2. 변호사 · 공인회계사 ·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3. 해당 분야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4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5. 관계 공무원 3명 이내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촉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.

**제10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**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

인 ·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
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6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계약체결 등)**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 ·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④ 민간위탁 계약서는 생산년도 다음해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**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「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사무처리의 지원)**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

있다.

**제14조(사무시설운영 인계 · 인수)**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탁기관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 민간위탁 계약서와는 별도로 물품의 항목별 점검상태 등 인계 · 인수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수탁기관의 주의사항)** 수탁기관의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,
2.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위탁시설・장비・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・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6조(사업변경 사전 승인)** 수탁자는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축・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7조(지휘・감독)**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・감독하며,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・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행한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제18조(사무편람)**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・처리기간・처리과정・처리기준・구비서류・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・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9조(이의신청)**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

청을 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서에 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처리상황의 감사)**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·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**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·파괴·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
3. 임직원의 배임·횡령으로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5.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

② 구정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해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제3자 위탁 등 금지)** 이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또한 시설물

을 양도하거나 대여 등을 할 수 없다.

**제2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.

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,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④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⑥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⑦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⑧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⑩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⑪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제31조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⑫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⑬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"를 "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"로 한다.

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후단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⑮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⑯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⑰ 울산광역시 중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⑱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⑲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⑳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㉑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

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㉒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㉓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㉕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㉖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㉗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㉙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㉚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

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㉛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 후단 중 “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## 4. 근거법규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제3항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“재위탁”, “재계약” 근거 마련 및 동의안 제출 기한·기준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